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고단1213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1213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

란)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여재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하여 술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16. 23:00 오산시에 있는 불상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고 싶어, 나 형수 따 먹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내사보고(2015. 1. 16. 23:00경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피험의자 이동 경로 및 뒤 베란다 구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 신매체이용음란 범행 날짜 특정)
- 1. 녹취록. 회신
-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 체 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합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하석찬